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5

제출년월일 : 1997. 6. 1.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청소년에 대한 건전 생활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등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도위원의 위촉(안 제2조)

- 1) 구청장이 관할지역 안의 동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 2)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 이 있는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나. 지도위원의 임무(안 제4조)

-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 3)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등

다. 지도위원 수(안 제5조) : 동별 10인 이내

라.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안 제9조) : 구·동 단위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없음
-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동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되어 있는 동청소년지도위원 및 지도협의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 별표 >

청소년지도위원회증의 규격·제작 및 기재사항 (제6조관련)

(앞면)	(단위:cm)	(뒷면)
청소년지도위원회증	0.3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①	1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⑤	4 8.1	⑥ (인)
②	0.75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	0.75	
④ ○ ○ 음, 면, 동	1	
	0.3	
4.9×7.5		
0.3 1.7 3.2 0.3		
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회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회증의 ①내지 ⑥의 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 (4.9cmx4cm)
- ② 청소년지도위원회증 번호
- ③ 성명
- ④ 소속기관명
-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